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의무에서 권리로

평등정책 토론회

사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5시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프로그램

‘가족정책’ 혹은 ‘여성정책’의 틀에 국한되지 않는 반차별 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은 평등한 사회의 비전을 드러내는 경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지위와 자격을 묻는 국가정책, 차별을 재생산 하는 가족제도, 친밀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돌봄을 주고받을 수 없는 가족, 불안과 위기로 내몰리는 개인의 삶에 응답하는 평등정책을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눕니다.

진행 **몽** (인권운동사랑방)

인사말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주민방송)

발제

총론 : 가족,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

통개 (가족구성권연구소)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사회보장권

한희 (SOGI법정책연구회)

더 잘 돌볼 권리와 기댈 권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가족 해소의 권리

공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토론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목차

발제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3
총론 :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4
1.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10
2. 사회보장권	20
3. 더 잘 돌볼 권리	28
4. 운명을 기댈 권리	32
5. 가족 해소의 권리	40

토론

[토론 1]	토론문 한부모의 자율적 가족구성권	43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토론 2]	토론문	47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토론 3]	토론문 장애여성과 가족 : 친밀한 통제, 불안한 돌봄	49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토론 4]	토론문	55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가족 평등정책 발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총론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1.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 2) 생활동반자로 인정받을 권리 3) 가족구성원이면서도 개인으로 존재할 권리
2. 사회보장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 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3) 평등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4)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공공부조
3. 더 잘 돌볼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권리 2) 평등한 돌봄지원을 받을 권리
4. 운명을 기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 관련 결정을 상의할 권리 2) 재난으로부터 함께 벗어날 권리 3) 애도를 누릴 권리
5. 가족 해소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인을 해소할 권리 2) 친권을 해소할 권리

총론 |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로서의 가족”

[1]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942명에게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¹⁾ 가족이란 조상을 같이 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26.3%),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1.2%), 호적 등 증명서에 함께 올라 기재된 사람들(9.4%)이라고 보는 시각, 즉 혼인과 혈연관계라는 특정한 형식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37%였다. 60%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달랐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30.1%),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3.9%),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14.9%)을 가족으로 보았다. 가족이라는 관계와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 결과도 비슷하다.²⁾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라는 의견에 66.3%가 동의하고 있다.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50%에 가깝다. 가족은 혼인·혈연과 같은 특정한 형태를 갖추으로써 ‘되는’ 집합명사가 아니라, 친밀성과 돌봄을 ‘실천하는’ 동사적 개념이라는 인식이 우세해지고 있다.³⁾

[2]

가족이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인식도 뚜렷하다. 앞서 언급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동거, 입양, 한부모, 재혼, 동성애 등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가족 구성의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90%가 이에 동의하였다.⁴⁾ 실제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모습이 여러 경로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의 탄생,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주제로 15편의 기획보도가 방영되었다. 3인 생활동반자, 청년 동거커플과 노인 동거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미혼부모,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이들이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의료, 주택대출, 연금제도 등에서의 차별, 사회적 편견과 낙인,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원가족과의 갈등 등이 다루어졌다.

제도 밖 가족, 비정형 가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성소수자, 이주민, 한부모가족, 1인 가구나 비혼 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하여 살다가, 이혼 후 1인 가구로 살기도

1) 국민권익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전성시대, 문제와 해법은?” 설문조사(조사기간 2014. 6.8~7.9), 질문 항목에 가족의 정의와 가족구성원의 다양성 증가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 문항과 결과는 다음 링크 참고. (2019년 10월 12일 최종방문) URL :

<https://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suve/UPoSurveyView.paid?txtSurNo=1AC-1406-001248>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19년 5월 24일자.

3) 한국의 가족변동과 가족실천에 대한 논의는 김원정,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2013년 7월 12일자 참고.

4) 국민권익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 설문조사, 위 자료.

하고, 혹은 동거/재혼을 하거나 공동체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은 이제 상상 가능한 생애 경로가 되었다. 제도 밖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모두가 잠재적 당사자일 수 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역시 점차 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3]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가족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법령에서 사용되는 가족은 혼인과 혈연중심의 전통적 정의에 갇혀 있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 대표적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혼인과 혈연관계에 기반을 둔 건강한 정상 가족을 상정하고 그 가족 모델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관계 안에서 개인의 신분과 거주가 등록되는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도 있다. 이상의 법률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평등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4]

2005년 개정되기 전의 (구)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호주제 폐지 후 이 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민법에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이 맞섰다.⁵⁾ 민법에서 가족 규정을 삭제하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는 우려, 호주제 폐지에 따른 국민의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타협에 따라 현행 민법은 제779조에서 다음과 같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는 같이 살던 그렇지 않던 민법상의 가족이고, 계부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은 같이 사는 경우에만 민법상 가족이다. 고모와 이모는 같이 살아도 가

5)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연하고 가족해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가족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고, 가족이란 용어는 다른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민법에서 정의해 주어야 한다”는 찬성론과 “법률상의 가족개념은 현실의 가족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고, 붕괴 또는 해체를 우려하는 가족이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현실의 가족공동체 내지 사회통념상의 가족을 의미하며, 민법에 가족개념을 규정한다고 하여 이로부터 곧바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실체법인 민법에 가족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개별법령에서 사용하는 가족의 개념은 그 개별법의 입법목적·취지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각기 다르고 이는 ‘친족,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민법에서 가족개념을 일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이 있었다. 장서연, “차별금지법에서 재정의 하고자 하는 가족이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제6차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범주: 차별금지법에 담기>, 2010년 12월 7일자, 자료집 발췌.

족이 아니다(부모의 형제자매이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다). 당시 이 조항에 대해 국회 여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를 규정짓게 되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대로 민법 제779조는 개인들이 다양하게 형성한 친밀한 관계를 부정하고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가족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수립을 위해 “가족실태조사에 다양한 동거 가구 조사를 포함해야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업무 영역은 민법상 가족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거 가구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⁶⁾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정책 수립과 점검 등을 목적으로 주요지표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가족형태별 분포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를 “가족 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하면서, 혈연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⁷⁾ 비혈연 가구가 현재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근거로 민법 제77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를 들었다.⁸⁾

이처럼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는 실재하는 다양한 관계들과 삶의 방식들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가르는 국가의 관점과 기준이 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인 지위는 제도 밖 가족의 권리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배제를 통해 ‘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혼 및 사별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동성커플가족, 비혼, 단독가구(1인 가구), 공동생활가족, 그룹홈 및 위탁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과 차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받거나 지원받아야 할 핵심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복지, 주거, 의료, 가족돌봄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가족이라는 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가족이라는 용어는 다른 여러 법령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1,400여개의 현행법률 가운데 200여개의 법률에서 가족이라는 용어가 유의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법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보훈/보상/포상, 재난/안전, 외교/안보/병역, 공공·민간영역의 선거 규제, 사회보장(보험/급여수급), 사회보장(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죽음/질병, 근로조건 규제, 교육, 가족관계 내 규제(가정폭력 등), 수형, 조세/각종세법,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으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

6) 시사IN, “가족법에는 없는 어떤 ‘가족’”, 2018년 9월 21일자. 한편 여성가족부는 5년 주기로 실행하는 가족실태조사에 2019년부터 동거 여부와 관련한 항목을 넣고, 올해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내년 본 조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BS뉴스, “여가부, 비혼 동거가구 실태조사 검토”, 2019년 5월 26일자.

7) e-나라지표 홈페이지, “가족의 형태별 분포” (2019년 10월 22일 최종방문)
URL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

8) 위 사이트의 <의견 및 질문> 항목 “1인 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알고 싶습니다”에 대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의 답변, 2017년 12월 1일 공개.

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21개에 이른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가족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족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되어있다. 검토한 법률 가운데 약 20%가 이처럼 개별법에서 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80%에서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개념이나 범위 규정 없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가족에 관한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779조 가족 범위 조항은 광범위하게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 관계의 정상성을 형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 개별법에서 필요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법적으로 넓히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기본법인 민법의 가족 범위와 충돌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회권, 시민권 전반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민법 제779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민법에서 제779조를 제외하면 가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민법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지원법」은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조 제1호에서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된다. 이 조항 및 법률명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 사별이나 미혼부모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 그룹홈 및 위탁가정 등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3조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혼인·혈연·입양에 관계없이 형성된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개념을 쉽게 추론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가족의 정의와 법률명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평등한 가족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과제이다. (아래 건강가정기본법의 총칙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였다. 여러 조항에서 개인과 가족,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어느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7년 아버지 교육으로 <아내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는데, 아래 총칙을 보니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개인이 아닌 가족 중심의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등록 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민법상의 가족 관계를 광범위하게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인데, 굳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개인을 가족 관계 안에서 존재하도록 만드는 제도들은 가족의 정상성을 획득하도록 압박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에 대해서는 낙인과 차별을 부과한다. 이러한 낙인과 차별을 거둬내고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가 작동하는 힘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로서 다음과 같은 평등정책을 제안한다.

평등정책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규정의 삭제 혹은 전면 개정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 가족을 경유하도록 만들어진 신분등록제도의 개선

1.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가족이나 개인은 역사와 관행에 의해, 의도적인 배제를 통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국적과 체류자격에 의해, 보수적이고 임의적인 행정 처리에 의해 ‘정상가족 밖’으로 밀려난다. 이렇게 구성된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지위는 ‘정상가족 밖’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강화한다. 바로 이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거나 각기 다른 가족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들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낙인과 차별을 경험할 한다. 또한 그 가족에 속한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거나 지원받아야 할 핵심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복지, 주거, 의료, 가족돌봄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가족이라는 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인정의 중요성은 단순히 가족제도에 편입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신이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 자신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다르게 차별받지 않는다는 감각, 함께 살고 있거나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공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다는 희망은 늘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가족 관계 및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1) 내가 누구이며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인정이 필요하다. 2) 친밀성과 돌봄, 경제적 부양 관계에 따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3) ‘정상가족’에 편입되지 않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다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가족제도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 속에서 개개인들이 위치해 있는 상호적 관계와 조건을 다양한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정당하고 평등한 조치로서 실현될 수 있다.

1)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

“미국에서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한국도 20년 전까지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동성동본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가 반려됐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⁹⁾

“국가가 한 개인이 결혼하려는 의지를 성적 지향에 근거해서 차별할 수는 없죠. 서로 자율성과 동의가 있다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 결혼은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해요. 자유의지에 반하는

결혼이 아닌 이상 국가가 동성 간의 결혼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봐요. 해외랑은 달리 한국은 여전히 동성결혼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아마 이성애가 아닌 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적 태도에 있다고 봐요.”¹⁰⁾

“(혹시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성 커플 등록제도가 생기면 등록하겠냐는 질문에) 난 했으면 좋겠거든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공공기관이나 어디 갔을 때 그냥 떳떳하게 집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게 떳떳한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죠.”¹¹⁾

한국사회에서 혼인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혈연관계 외에 자신이 개인이 선택한 가족을 신고와 등록, 증명을 통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이미 2002년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며 공개 결혼식을 올렸던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에서 사회자는 “우리나라도 10년쯤 후엔 오늘 같은 결혼식이 매우 자연스러운 자리가 될지 모릅니다”며 한국사회의 혼인과 가족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바 있다.¹²⁾ 그리고 10여 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2013년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공개 결혼식 이후 국내에서 동성결합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흐름은 제자리에 멈춰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인은 민법상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되고(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상 정해진 신고방식에 따라 개인들의 혼인 의사를 합치시킴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민법 제779조는 혼인 자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혼인 배우자의 자격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법률 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가 혼인제도에 진입해서 가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동성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누려야 할 평등한 법적 지위에서 차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지위에 부속되는 다수의 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되고, 이러한 차별은 가족 관련 제도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성소수자가 혼인제도에 진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상속, 조세, 연금, 주택,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차원에서 받는 불이익은 심각한 차별이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권리는 그러한 법제도 상의 이익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에 따른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인권과 시민권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미 혼인 개방이나 동성결혼 제도화, 파트너십이나 시민결합과 같은 법제화를 통해 성소수자의 가족구성

9) 김조광수 감독, “‘동성혼 기각’ 김조광수-김승환 “싸움은 이제부터””, <오마이뉴스>, 2016년 5월 26일자.

10) 레즈비언 여성 인터뷰이의 사례.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8권 제2호, 206쪽.

11) 한 명이 FTM인 동거 커플의 사례. 가족구성권연구모임·민주노동당, 2008,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103쪽.

12) 동아일보, “국내 처음 공개 결혼식 올린 레즈비언 커플 한미진·이주경”, 2002년 12월 17일자.

권을 이루어나간 해외 국가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혼인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의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부당하게 특정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지 않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의 인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결합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의 ‘양성의 평등’ 규정이 이성간의 혼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 상 이미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성소수를 차별하고 동성결혼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기존의 여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혼인과 가족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는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¹³⁾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제10조)과 평등권(제11조)이다. 헌법 제36조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시한 것이라면, 제10조와 제11조는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대한 국가 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핵심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헌법의 핵심 이념은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자율성과 존엄을 가진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는 법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판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혼인을 결정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상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불인정과 공백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책임의 공백을 의미한다.

2016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동성 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평등권 침해 사례이다. 당시 서대문구청장은 소수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동성이 혼인까지 하겠다는 것은 전체 문화와 사회질서 법테두리 이전에 사회적인 규범으로도 삶의 질서와 공동체의 정체성에 있어 위험한 생각”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부정한 바 있다.¹⁴⁾ 하지만 성소수자의 법제도적 권리를 사회적 규범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 장의 발상이야말로 오히려 위험하다. 법률 상 동성을 혼인의 당사자로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인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이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해석해 자체적으로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역시 각하 결정을 통해 혼인평등의 길을 막았다. 한편으로는 사법의 역할이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 동성 커플의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성소수자의 평등권은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사회진보적인 해석과 함께 기존 가족법의 차별과 공백을 고려한 판결을 통해서도 보장될 수 있다.

13) 류민희,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2013년 8월 20일;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등 참고.

1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독자투고/문석진]동성결혼 반대한다”, <동아일보>, 2013년 12월 27일자.

한국의 가족 관련 법제도는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 규정 철폐, 2005년 호주제 철폐 등의 과정을 통해 꾸준히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혼인의 의미를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법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기관과 판결기관, 정부 모두가 현재의 사회적 조건과 인식,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1994년까지 동성애 처벌 조항이 존재했지만 2001년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는 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에는 입법과 판결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변화를 이끌어낸 연방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단 한 번의 입법이나 판결로는 사회적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때, 여러 차례의 입법과 차별금지 판결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 역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¹⁵⁾ 또한 2017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을 통해 혼인평등을 제도화한 대만의 사례는 입법이나 판결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인평등을 위해 싸워왔던 주요 활동가들은 대만의 사회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으로 2004년 성평등교육법 제정, 그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을 꼽고 있다.¹⁶⁾ 이미 성평등 교육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혼인평등은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규범이 제도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해소하고 개인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친밀성과 돌봄의 관계를 법제도를 통해 인정받고자 요구하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소수자 혼인평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기존의 혼인·가족제도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없었던 성소수자가 정당한 제도적 혼인·가족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소수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자신과 가족 관계를 인정받음으로써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다.

평등정책

- 행정기관이 혼인신고를 임의로 거부하는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동성 간의 결합을 이성 간의 결합과 동등한 지위에 두는 방향의 민법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 혼인평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15) 이보연, 2019, “독일 동성혼 인정 과정을 통해서 본 의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상호작용”. 『서울법학』 제26권 제4호.

16) 서울신문, “대만 동성커플 3000여쌍 결혼… 세상 밖 나왔지만 편견과 싸움 남아”, 2019년 8월 22일자.

2) 생활동반자로 인정받을 권리

“대안가족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혈연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지 말고, 장애 여성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받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정해 달라고.”¹⁷⁾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싸움이다. 생활동반자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이를 둘러싼 싸움 자체가 사회 전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흐름을 만든다. 국가의 역할은 내 삶의 선택지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어떤 법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¹⁸⁾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 있는, 내가 믿는, 절망 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¹⁹⁾

그동안 한국사회는 법제도적 인정을 통해 남녀의 혼인과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정상가정’ 혹은 ‘건강가정’으로 정의하고 전통적인 가족을 지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규범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인구재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돌봄이라는 국가의 복지기능을 많은 부분 가족 안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할 국가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의 관점과 필요는 2005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표적으로 드러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건강가정을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 출산,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 법의 관점 자체가 가족의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정상가족의 ‘해체’를 우려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위기 가족, 비정상 가족으로 위치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2005년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의 명칭과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중립적으로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맺는 관계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핵심적이다. 이미 성소수자, 비혼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수 많은 사람들이 혼인관계와 부모자녀관계라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가족,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제도적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이성애 동거가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의 증가는 가족제도가 혼인과 혈연을 통해 맺어진 협소한 관계만이 아니라, 상호적인 애정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돌봄

17) 장애인 동거 커플의 인터뷰 사례. 가족구성권연구모임·민주노동당, 2008,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102쪽.

18)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민법 779조는 오늘 파산했다”, <시사IN>, 2019년 5월 22일자.

19) 청와대 국민청원,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청원시작 2017년 10월 20일(참여인원 59,611명)

20)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2005년 10월 10일.

관계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가족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을 친밀함과 돌봄 실천에 의한 동반자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가족 관계가 보호자와 피보호자,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라 상호적인 연대와 결합의 관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성소수자 혼인평등과 마찬가지로 생활동반자 가족 또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권리 침해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할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있었다. 상호합의에 이루어진 친밀한 가족 관계와 그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실천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역시 법제도의 역할이다. 하지만 2005년 당시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던 이들이 외쳤던 말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그가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든 혼자 살고 있든, 혹은 다른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고 있든 간에 사회보장제도 및 기타 정책의 수혜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10여 년 전보다 더 다양하게 가시화되고 더 많은 수의 생활동반자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들 가족이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의미의 가족과 구별되어야 할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가족 개념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바로 이러한 가족변화의 흐름 속에서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은 이성과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가족처럼 서로 합의하에 지속적인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 등록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2014년 진선미 의원 역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며 다양한 동거가족 구성원들이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발의에 이르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 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며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가족 형태의 전형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족구성이 빠르게 진행되어온 상황에서 ‘가족(생활)’을 ‘혼인’과 결부시키는 가족제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있게 설명하지도, 포괄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미 다양한 방식의 가족구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속한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 밖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정상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적인 배제와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혼인제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친밀함에 대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욕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다양한 가족 관계의 제도적 지위를 차별 없이 부여하는 제도적 인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성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성애 관계를 전제로 한 혼인 여부 및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친밀함과 돌봄, 생계와 부양을 함께 하는 관계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의료, 주거, 가족돌봄 및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정책 |

- 다양한 가족 및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법 명칭을 포함해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이성에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생활동반자 관계와 공동체 가족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3) 가족구성원이면서도 개인으로 존재할 권리

“내가 키우는 아이를 그냥 ‘자(子)’로 표기하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다.”²¹⁾ “이사하고 첫등본 떼고 엄청 울었던 날이 있었네요. 제 아들이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오며 서열도 맨 아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정말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²²⁾

실제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며 어머니 성으로 바뀌 달라는 A씨(26·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본 변경을 해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법적 친부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며 “성·본 변경이라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²³⁾

“두 사람은 4년 전에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별도의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1년 수님이 태어났다. 아이는 현재 한국에도, 베트남에도 ‘없는’ 아이다. 아직 그 어느 나라에도 출생등록이 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수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체류 상태가 불안정한 부모는 자국 대사관을 쉽게 찾아가지 못한다. 서류에 이름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터다.”²⁴⁾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2007년 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가족’을 기본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을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 가족에 속한 존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개인의 신분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점은 개인의 가족 상황에 따라 개인의 존재와 지위의 증명이 차별적인 조건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정상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공고한 상황에서 재혼가족이나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다문화 가족), 동거가족 등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가족 상황에 따라 불평등한 지위와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이 ‘국민’으로 제한된 탓에 자신의 존재 자체

21) 재혼가족 부모의 사례. 연합뉴스, “상처받는 재혼가정…자녀들 등본에 ‘동거인’, 다자녀혜택 제한”, 2016년 7월 4일자.

22) SBS, “[취재파일] 재혼 가정들의 속앓이…‘동거인’ 지우려 편법 감수”, 2015년 3월 30일자.

23) 중앙일보, “아버지 흔적 지우고 싶은데 … 성·본 변경 신중해진 법원”, 2015년 7월 18일자.

24) 한겨레21,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2013년 11월 5일자.

와 가족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주민 가족 또한 적지 않다.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 구성원들이 놓이게 되는 자리는 제도 내 가족이라면 으레 갖게 되는 안정적인 지위와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가족’이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을 일상적으로 마주한다. 「주민등록법」 제14조는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신고를 같음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재혼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가족 관계를 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혼가족들은 ‘동거인’ 표기로 인해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며 호소했고, 재혼가족의 자녀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고통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취한 조치라고는 2016년에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되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 세대주의 관계를 ‘동거인’에서 다시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할 뿐이었다. 물론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친양자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는 있으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부모의 동의 등 이전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활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가 주민등록등본의 동거인 표기를 없애기 위해서 재혼가족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주소지를 따로 등록하는 편법을 사용한다.

정상가족 규범이 강력한 상황에서 이혼, 재혼, 입양가족은 공통적으로 가족상황이 드러났을 때 개별 구성원들이 차별을 경험하기 쉽다. 이 때문에 재혼가족에게 ‘배우자의 자녀’와 ‘동거인’은 구별짓기와 낙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는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지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건강한 가족’과 덜 건강한 가족이 존재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재혼가족의 자녀를 ‘자(子)’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라는 차등적인 지위에 두는 규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녀의 새로운 아빠를 부(父)로 표기할 수 없는 재혼가족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을 모(母)의 성으로 하기 어려운 조건의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겪는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781조 규정 때문이다. 민법 제781조에서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자녀의 성은 혼인 시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사실 상 아버지가 동의할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또한 그 협의 시점이 ‘혼인 시’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자녀 출생 시에 다시 한 번 협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고 제도와 함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부계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게다가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규칙」 제59조2의 2항에서는 관계자 친부의 의견청취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성인 자녀가 스스로 필요와 복지를 판단하고 변경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친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과 본의 변경에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현행 법 규정의 취지와 호주제 폐지 당시의 성평등 관점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도 다른 불법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불행과 불이

익을 법원이 판단해서 기각하는 사례는 우려스럽다.

지난 2019년 9월 여성가족부는 전국 만 19~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는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남성 63.4%, 여성 77.6%).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고, 한국사회에서 가족생활을 포함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자녀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 이에 반해서 성·본의 변경에 다른 가족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정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성·본의 선택 및 협의가 성평등한 가족관계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개인의 신분등록이 가족관계등록에 의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제1항 목적에서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출생 증명은 대부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가 구성되었을 때만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에는 ‘국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국민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가족에 대해 동등한 가족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허가자,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 무국적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주배경 아동(child with migration background) 혹은 이주 아동(migrant child)은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출생등록이 ‘다른 권리의 보호를 위한 발판’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²⁵⁾ 출생등록은 국가에 의해 존재 자체를 확인받음으로써 아동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강권, 교육권 등과 같은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아동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과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 등 필수적인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나 불법입양, 아동노동, 가족 내 학대나 폭력 등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출생등록은 아동이 가족구성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아동에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외국 출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출생하는 즉시 등록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2018년 9월 원혜영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출생등록부’를 신설하고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출생 신고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²⁶⁾

25) 김철효,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연구 결과 및 정책제언”, 세이브더칠드런·유엔난민기구·국가인권위원회,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2013년 11월 8일.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권리위원회, “[성명]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와 증명을 보장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8일.

하지만 출생등록이 기본권으로서 비단 아동 개인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가족 내 아동들은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미 형성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강제출국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는 그 자체로 이주배경 아동이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가족 내에서 보호받고 양육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 조건이 되고, 그로 인해 건강권이나 교육권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부모가 아동과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가족결합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난민 및 이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족결합권은 “가족이 함께 살면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경과 보호, 지원과 지지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²⁷⁾ 이주배경의 아동이 출생등록 될 권리는 아동의 존재를 등록해서 국가로부터 확인시켜줄 가족의 역할, 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가족의 역할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보편적인 출생등록제도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동과 부모 모두가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부모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할 경우 강제퇴거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아동의 출생등록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아동,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출생신고와 국적취득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신고 될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고, 사회권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신국 혹은 법적인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에 제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제도는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향해 제반 제도들을 정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평등정책 |

- 현재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지위와 대우를 유지시키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야 한다.
-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성주의를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를 개정해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법」을 기반으로 한 출생등록은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적극 고려해 개정되어야 한다.

27)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범위”, 2016년 1월 26일.

2. 사회보장권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사회권규약 제11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인 위험을 마주한다. 이러한 위험들은 주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에 마주한 개인들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된다. 한국 역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법령들을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의 권리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특히 다양한 가족상황 및 가족형태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평등은 없는가? 실제 제도들을 살펴보면 가족을 매개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다수 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혈연이나 특정 결합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러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들의 결합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성 간에만 법률혼이 가능하기에 동성 커플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연금수급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이 갖는 개인의 돌봄과 부양의 문제를 가족 내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림에 따라 개인들이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제가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위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모순될 수 있다. 하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가족으로 묶여 있기에 사회보장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봄의 수행자로서 가족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그리고 가족형태 및 상황에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로 질문을 바꿔보면 이러한 모순은 해결된다. 소위 말하는 ‘혈연가족’이나 그밖에 친밀에 기초한 공동체가 서로를 부양하고 돌보는 것은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과 부양은 어디까지나 개인 간의 친밀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돌봄의 기능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는 혈연, 이성혼에 기초한 협소한 관계만을 ‘정상가족’으로 설정하고 사회보장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가족 내의 돌봄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상가족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기능은 무시하고 다양한 개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본래 서로간의 친밀에 기반하여 자발적인 돌봄이 이루어져야 할 관계들이 왜곡되고 개인들의 사회보장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가족형태 및 상황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밀과 돌봄의 관점에서 가족은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지’, ‘개인이 동등한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리면서 또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 가족,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직장이 없을 때는 의료보험이 제 앞으로는 안 나오고 그 친구 거만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앞으로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취직하고 나서는 따로 나와요. 저는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오고 그 친구는 직장 의료보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만약에 결혼 커플인 경우에는 부양자 차원으로 해서 의료보험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은 없으니까 그 점이 불편한 거 같아요. 저희는 거의 10년 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같이 살 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20년 앞으로 더 같이 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²⁸⁾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동포인 스무 살 R씨. 뇌경색이 온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로 33만원을 내야 한다. 바뀐 건강보험제도는 R씨와 어머니, 할머니를 각각의 세대로 보아, 11만원3050원씩 보험료를 걷는다.²⁹⁾

국민건강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소위 4대 보험으로 하나로서 사회보험의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가 함께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범위³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소위 혼인과 혈연에 의한 가족이다.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여타의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가족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족보험으로서의 성격은 가족의 범위와 개념이 변천함에 따라 피부양자 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해온 점에서도 드러난다. 1977년 최초로 의료보험 강제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피부양자범위는 남성가입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및 부계직계혈족에 한정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여성가입자의 시부모가 피부양자 범위에 편입되었고, 1985년 장인, 장모 1988년에는 형제자매에까지 그 범위가 넓혀졌다.³¹⁾ 최근에는 이혼·사별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

28) 류민희 외,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생활동반자 사례자 포커스 인터뷰를 통한 정책육구조사』.

29) 미디어오늘, “4인 가족 건보료가 45만원, 실화냐”, 2019년 8월 26일자.

30) 「국민건강보험법」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³²⁾이 나오에 따라 이들 역시 피부양자로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피부양자 중 배우자의 경우는 법률혼만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증빙서류(보증인 2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 사본)를 제출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제도는 산업화와 사회인식에 따른 가족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그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친밀과 돌봄에 기초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동성커플이다. 동성커플 중 한 쪽이 직장 가입자로 부양을 할 경우 그 동성파트너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에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법원은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사실혼의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³³⁾,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도 없다. 이러한 배제 속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차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증가이나 단지 그것만이 문제라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누구나 누리는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소외, 박탈감이 더 크다. 성소수자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로서 44.6%가 피부양자 인정을 뽑은 2014년의 조사결과³⁴⁾ 역시 이를 잘 나타낸다.

한편으로 국적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피부양자 범위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다. 2019년 7월 보건복지부는 한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주민들의 건강보험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민들은 모두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개정이유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였다. 그러나 그 실질은 보험가입과 체류자격을 연동시킴으로써 이주민들의 삶을 불모로 삼은 제도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주민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없거나 발급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서류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³⁵⁾

평등정책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는 변화하는 가족개념에 발맞추고 사회보장의 본질적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동성배우자 역시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주민 역시 한국인과 동등하게 피부양자 범위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31) 이미숙, 2008, “국민건강보험에 함의된 가족 규범과 피부양자제도 변천”, 『한국사회학』, 제42집 제6호.

32) 국가인권위원회 06진차219, 13진정0527800 결정문

33)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판결

34) 나영정 외, 201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주요결과 보고서』, 21쪽.

35) 이주와인권연구소,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약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 2019년 8월 26일자. (최종방문 2019년 10월 22일). URL: <http://www.mihu.re.kr/activities/healthcare-2019-08-26/>

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연금 관련 성소수자 차별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동성부부 법적 인정은 안하고 있어서 유족 연금 수령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17. 9.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중 보건복지부 답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제도는 당사자가 사망 시 그 유족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족연금제도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서의 유족이 반드시 민법상의 배우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했다면 유족연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모든 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으로 언급은 없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³⁷⁾,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법문에 명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³⁸⁾

그러나 이처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역시나 동성배우자는 배제된다. 앞서 보았듯 동성배우자는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사실혼조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제는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첫머리와 같이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았기에 유족연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동문서답만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족연금의 경우 이성 동거커플 역시 배제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달리 유족연금의 경우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한 증빙자료(결혼식 사진, 가족의 왕래, 통장내역 등)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동거커플은 서로를 돌보고 친밀감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을 인정받지 못해 남겨진 한 쪽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 설명하고 있다.³⁹⁾ 그러나 가입자, 수급권자의 보호가 반드시 법률상 혼인만을 이유로 할 필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성간의 좁은 사실적 혼인만을 이유로 할 필요 역시 없다. 친밀과 돌봄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급권자의 두터운 보호를 실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3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37) 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2014년 5월 22일자.

38)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9)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사전, URL : <https://www.nps.or.kr/jspage/app/etc/dictionary.jsp>

평등정책 |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는 민법상 배우자가 아닌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취지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성배우자 및 생활동반자 역시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3) 평등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신혼부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신청을 하려면 제약이 많더라고요. 청약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는 거고...”⁴⁰⁾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속법이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동거인 2명 중 1명의 사망 시, 생존한 성소수자 동거인에게 거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인권법 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한국방문보고서⁴¹⁾

인간 삶의 기본 요소가 ‘의식주’인 것에서도 나타나듯 주거생활의 권리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공공주택공급, 주택구입·대출자금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복지정책 역시 혼인과 혈연이라는 소위 ‘정상가족’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연간 10.8만에서 13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⁴²⁾ 문제는 이러한 임대주택들이 ‘신혼부부’에 우선하여 공급되면서 혼인과 자녀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는 1인 가구, 동거가족, 동성가족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신혼부부 유형의 공급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여기서 신혼부부는 법률상 혼인한 부부만을 가리키며 따라서 비혼동거를 하거나 동성 간ಿಗೆ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1인 가구로 분류되어 행복주택 공급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 또한 설사 커플 중 1인이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배우자나 파트너랑 함께 입주할 수도 없다.⁴³⁾ 마찬가지로 동거, 동성커플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대출지원에서도 배제된다.

한편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 역시 달라진 가족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혼인 중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혼인신고 전 출산을 하고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위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

40) 변수정 외,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120쪽.

41) UN Doc. A/HRC/40/61/Add.1

42) 국토교통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주거복지 로드맵” (최종방문 2019년 10월 22일)
URL :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gna.jsp>

43) 오마이뉴스, “임대주택은 '로또', 30대 여성은 슬프다”, 2018년 7월 27일자.

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⁴⁾ 이 역시 국가가 개인의 삶을 혼인→출산이라는 단선적인 단계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정상가족’에서 벗어나기에 받는 주거권 차별은 개인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한다. 바로 임대차 승계의 문제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커플은 위와 같은 임대차승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커플 중 임차인인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남은 한 명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조차 누리지 못한 채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제2조에서 이와 같이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권은 헌법 제3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 중 하나로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지향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주거권에서의 차별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평등정책 |

- 혼인과 출산이라는 정상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과 가족형태 및 상황에 맞춘 주택공급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생활을 같이 하며 돌봄을 다하는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승계권 등 주거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공공부조

“없이 지내니 천원이 엄청난 돈이더라 이거여. 그런데 (생계급여를) 까고 또 까고... 돈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지 몰랐어. 이렇게 된 게 창피하니까 친구들한테 도와달라 말도 못해.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어요.”

그에게도 한때 가족이 있긴 했다. 삶에 풍파가 몰아치면서 아내와 헤어졌고, 자녀 여섯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지금은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자식들에게 그의 부양의무 책임을 떠넘긴다. 201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진 매달 생계급여 40여만 원 가운데 무려 30만원이나 깎였다. 자녀 6명 가운데 누군지도 모르는 1명의 소득이 상승하면서, 간주부양비가 매겨졌다.⁴⁵⁾

“기초생활보장법 1조를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 적혀 있지 ‘국민’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기준은 ‘국민혈통 유지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보장 않겠다’고 말합니다.”⁴⁶⁾

44) 서울경제, “혼인신고 후 출산해야 1순위? 현실과 먼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정”, 2019년 9월 23일자.

45) 한겨레, “‘자식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생계급여 깎고 또 깎고”, 2019년 10월 4일자.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제도와 감면제도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지원이 여전히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설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등의 이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자격기준을 말한다.⁴⁷⁾

이러한 기준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의 책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기초법의 제정은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으로서 빈곤문제를 접근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빈곤의 1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으며 가족의 돌봄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계적 인식을 보여주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조사⁴⁸⁾에 따르면 수급을 신청자 중 67.59%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수급권 자격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24.8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법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급권자 개인이 자신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 내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고 또한 심리적으로 가족관계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수급권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나아가 설령 가족관계 해체를 주장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위해 자신의 내밀한 가족사를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때로는 이를 타인에게 인증 받아야 하는 모욕적인 상황에 놓인다.⁴⁹⁾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최근에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폐지를 기다리기에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갖는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다.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없는 것도 문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기초법이 갖는 사회적 권리 조장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유예 없는 즉각적 폐지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기초법의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외에도 여럿 존재한다. 그 중에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46) 미디어오늘, “기초법 20년, 수급자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다”, 2019년 4월 30일자.

47) 「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48) 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49) 서울신문, “[단독] 모욕받는 빈곤층…기초수급 신청 때 ‘가족해체 제3자 인증’ 요구”, 2019년 8월 20일자.

있다. 기초법 제5조의2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수급권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이나 출산을 매개로 가족을 형성한 이주민에게만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개인이 누려야 할 사회보장의 권리를 낡은 가족관계에 붙들어 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재생산한 경우에만 수급권을 인정하겠다는 비인격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라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은 즉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

평등정책 |

- 빈곤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며 모든 개인들은 존엄과 평등에 기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써 기초생활 수급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 사회보장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 또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수급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더 잘 돌볼 권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 양육과 부양의 의미를 포함하는 돌봄은 서로의 생활을 챙기고 보살피는 일상 전반에 요구된다.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으며, 특히 여성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1인 가족의 증가 등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에 따라 돌봄에 대한 필요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돌봄에 대한 전반의 문제인식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돌봄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은 가족의 역할과 책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다각도에서 여러 문제들을 짚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민법 상 규정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행 제도의 문제들을 짚고자 한다.

동거가족, 동성가족, 공동생활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 상호관계 속에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음에도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제한한 제도에 의해 돌봄의 권리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는 관계들을 살피고 모든 사람들이 돌볼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을 방안들을 평등정책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고정된 성역할이나 가족 내 위치에 따라 돌봄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족 안에서조차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이것이 명백한 차별이며 시정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권리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쓴다는 의미다.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쓴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휴직 제도이다. 출산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등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 줄 수 없던 노동자들이 가족을 돌보는 데 온전히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되어 있다(「남녀고용평등법」제 22조의 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법적 가족 외의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직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마저도 남녀고용평등법의 대상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될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개정 2019. 8. 27.> 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도는 여전히 혼인·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게만 돌봄 시간을 지원한다. 그러나 가족돌봄경험 및 인식 조사에서 만 40~54세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 조카, 지인, 친구, 이웃 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거나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이 때 특히 가족 외 다른 사람을 돌 볼 경우 무급휴직의 사용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소득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돌보아야 하는 관계가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가족 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돌봄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가족돌봄제도가 있는 해외에서도 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특히 독

50) 박선영·박복순·송효진·김정혜·박수경·김명아, 2016, 『여성·가족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가족돌봄제도 심층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의 경우 사실혼, 결혼에 유사한 공동체의 상대방,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와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고 있다. 돌봄은 무엇보다 개인들이 맺는 상호관계성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돌봄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넓혀주어야 한다. 휴직은 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대상 범위에 제도 밖 가족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직은 본인 외에 돌봄을 수행할 다른 가족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된 이 조건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돌봄을 수행할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돌봄 휴직을 거부해도 무방한데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여건이 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용여부가 나뉠 수 있다. 또 미취업 상태인 가족이 있으면 돌봄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돌봄에 대한 성별분업이 여성편향적인 현실에서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쉽게 부과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족돌봄휴직에서도 이 조건의 삭제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휴직이 보장되어도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조정 어려움, 불이익 조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⁵¹⁾ 간호계에서 임신 순번제를 강요받았던 사례는 실제로 휴직을 사용하기가 얼마나 곤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도가 법으로 명시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취약계층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제도를 사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행실적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실제로는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인권위에서 사업주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⁵²⁾ 또한 비혼여성이 출산휴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 당하거나 눈치를 보다 퇴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직장 내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업주는 휴직에 따른 업무시간 조정, 대체인력 마련 등을 통해 휴직이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이행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돌봄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치료비와 같이 돌봄에 필요한 비용도 있지만 우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생계를 무시할 수 없다. 돌봄전담자가 경제활동을 병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⁵³⁾ 가족 내 경제능력에 따라 돌봄 환경에도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51) 연합뉴스, “직장인부모 64% “육아휴직 경험없어”...30% “회사 눈치 때문””, 2019년 7월 1일자.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 부모 666명을 조사해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63.5%인 423명은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중 30.3%인 128명은 ‘회사 눈치’를 그 이유로 꼽았다.

52)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18년 3월 22일.

53)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병원비용도 그렇고. 좀 주눅 드는 게 있어요. 엄마가 돈이 그만큼 들었다, 이걸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를 도와줘, 도 아닌데 엄마에 대한

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돌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재정적 여유가 있지 않으면 사실상 휴직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돌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의 40%를 보전해주고 독일의 경우 돌봄지원수당이나 무이자 대출을 통해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이나 아동돌봄에 있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돌봄비용을 분담해주기도 한다. 돌봄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생계걱정 없이 돌봄 수행이 가능하도록 돌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등정책 |

- 「남녀고용평등법」, 「공무원 가사휴직」 등에 명시된 돌봄휴직의 대상 범위에 제도 밖 가족을 포함하여 확대적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다른 가족의 돌봄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을 개정해야 한다.
-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족돌봄휴직 시 돌봄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평등한 돌봄자원을 받을 권리

기업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나 경조비, 경조 휴가 등의 지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진 구성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가족 안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나 법적 가족 구성원만을 한정하여 지급되어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조휴가의 경우 회사마다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한 회사 내에서 시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7일, 친정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5일을 주는 것은 차별적인 돌봄자원에 해당한다. 얼마 전에는 모 공기업에서 가족수당을 장남과 독녀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인권위로부터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⁵⁴⁾ 또, 경조사비의 경우 친가와 외가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차별적 규정들도 여전하다.⁵⁵⁾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가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경영상 재량의 범위를 넘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낸 적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는 친가와 외가에 동등한 휴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통과하지는 못했다.⁵⁶⁾ 그런 동안 이러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관행은 어떤 개선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경

애기를 나누는 건데도 돈 얘기할 때는 늘 미안해요.”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딸을 넘어 시민을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비혼/딸 부모돌봄, 두려움과 막막함 사이: 돌봄연대 사회를 상상하다』 토론회 자료집, 2018년 10월 17일, 59쪽.

54) 한겨레, “장남과 무남독녀만 혜택 주는 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은 차별”, 2019년 7월 24일자.

55) 시사저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도 휴가없다는 대기업”, 2019년 2월 13일자.

56) 2017년 5월 박경미 의원, 2018년 7월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조사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요청된다.

이렇게 가족 내에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적 가족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사내 복지제도는 대부분 이성혼 중심의 혈연관계로 보장된다. 늘어나는 1인 비혼 가구나 동거커플, 동성커플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사내 복지 제도 자체로부터 박탈감을 느끼거나 배제당하기도 한다.⁵⁷⁾ 사내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변화하는 삶의 형태에 대한 고려가 우선해야 한다. 일터 밖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개인을 존중한다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삶을 반영한 다른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하든 생활을 같이 하든 어떤 삶의 형태와 무관하게 규정으로 나누지 못하는 관계들을 어떻게 포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다. 이때 정부는 평등한 돌봄지원의 분배를 기업의 자체적인 규정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경조사 휴가 규정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기업들의 자체 내규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시정되지 않을 때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때 경조사 휴가의 범위에는 성별 및 가족형태, 가족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비단 법안의 제·개정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먼저 공무원과 군인 등 국가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지원 표준권고안을 마련하여 돌봄 자원이 성별이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평등한 돌봄지원 정책을 먼저 실천하고 이를 민간에 홍보,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자체 내규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평등정책 |

-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등 국가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돌봄지원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민간에서도 돌봄자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성별 및 가족형태, 가족상황 등에 따른 차별적인 요건을 없앨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민간에서 평등한 돌봄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57) “가족 수당도 못 받고. … 동성결혼이 안 되더라도 일차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동반자법’, 그것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나중에 연금 같은 거, … 다른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어서 먼저 가면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니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7, 『나, 성소수자 노동자 - 두 번째 이야기: 둘로 나뉜 세상에서 살아남기』 자료집, 67쪽.

4. 운명을 기댈 권리

살다보면 누구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순간 '가족밖에 없다'는 불안이 어찌면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근원적 동기일지도 모른다. 의학적인 경우든, 재난에 휩쓸리는 경우든, 누가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지지해줄지, 누가 나를 대신해 나의 뜻을 지켜줄지 묻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을 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성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또는 내가 혼자 산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도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운명이 위태로울 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다양하다. 아플 때 곁에서 돌봐주기를, 위험에 빠졌을 때 달려와 주기를, 수술장에서 나오지 못하면 뒤를 책임져주기를, 나를 위한 애도와 작별의 시간을 가져 주기를 ...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기대의 대부분은 사회가 공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만약 사회가 대신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순간들에서 나의 선택이나 결정을 가장 잘 알아차리고 가장 나중까지 지켜주리라는 기대일 것이다. 운명을 기댈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행복추구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개개인을 '내버려두는' 때가 아니라 '결정을 도울' 때 가능해진다. 자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도 필요하다. 국가는 이런 권한과 책임을 뭉뚱그려 가족에게 부여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야 하거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특히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부여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된-민법 제779조가 규정한⁵⁸⁾ 가족이 그대로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특히 현행 법제도는 이성 간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을 인정하는 탓에 당사자가 가장 기대고 싶을 법한 사람이 제도나 절차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크다. 법정 대리인 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둘 수도 없다. 유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에게 운명을 기댈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자와 함께 그 운명을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정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자기결정을 지키고 이를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58)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위기상황인 의료현장, 재난, 장례에 관한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한다. 나의 운명이 위기에 놓일 때 누구에게 어떻게 기댈 수 있을지 살펴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를 찾아볼 것이다.

1) 의료 관련 결정을 상의할 권리

“제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시고 형제들을 불편하게 오라 가라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네 수술동의서를 써야 했는데 친구는 안 되고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언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언니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⁵⁹⁾

“1인가구입니다. 본인이 서명하는 걸로 하지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채 내 뜻을 밝히자 담당 의사는 난색을 표하면서 “어, 그렇게는 안 될 건데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 뒤 드나드는 간호사마다 동의서 서명이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 빨리 가족을 부르라고 재촉했다. 가족이 없는 1인가구라고 재차 말했지만 아니, 멀쩡한 아주머니가 왜 가족이 없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편이 없으면 다 큰 자식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⁶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권리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질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이루어질 치료, 향후 계획 등은 환자 본인이 듣고 환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다. 의료법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인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24조의 2).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병원은 '보호자'를 요구받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몸이 아프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병원이 요구하는 '보호'와 환자가 원하는 돌봄과 지지는 어긋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병원이 관행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원약정이나 수술동의를 요구하면서 환자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법정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주위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많은 병원들이 '입원약정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 진료비 수납에 대한 책임을 나눠 질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관행은 이미 문제가 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8년 공문을 통해 시정을 지시했다.⁶¹⁾ 그러나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서명을

59) 푸른산(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2012, 『비정상가족들의 비범한 미래기획』 자료집.

60) 권영란, "1인가구로 살아남기", <한겨레>, 2019년 7월 29일자.

요구하는 것 역시 관행일 뿐이다. 의료분쟁 등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는 것이다. 규정이 없다 보니 '보호자'의 범위는 자의적이다. 대개 직계가족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가 있어도 보호자로 적극 나서기 어렵다. 아픈 데 더해 무력감까지 느끼게 된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문제다.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의존 상태가 강요되는 셈이다.

만약 환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등에 앞서 설명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과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운명에 가장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의료법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규정이 모호하다. 그렇다보니 의료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법한 사람을 가리게 된다. 환자 본인이 누구에게 기대고 싶은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대만 타이중시는 관계규정 해석에 관한 문건을 통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동성파트너도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기 이전에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런 노력은 서류의 형식 변경에 그치지 않고 의료현장에 퍼져있는 문화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의료법 관련 규정의 검토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돌봄과 관련이 깊다. 간병 등 돌봄노동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여성이 떠안게 되는 점도 문제지만 환자 본인이 비자발적 의존을 강요당하게 될 수도 있다. 기댈 권리를 누리려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환자에게는 직접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관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지가 필요하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환자를 가장 잘 알고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의료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⁶²⁾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인이 자신과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명 후 확인 서명을 받아두는 경우도 많다. 반면 정작 환자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설명을 요청할 때 거부당하기도 한다. 동성배우자의 경우 문화적 편견이 작용해 설명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설명하려고 나서는 때에도 보호자는 직계가족으로만 이해되는 것이다. 누군가 수술을 할 때 수술장 밖에 보호자가 대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술 결과가 어떤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그 보호자가 직계가족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환자의 입장에서 그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의 운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환자 본인의 상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부문에서 '가족'이 쟁점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의료기록이다.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

61) 공공병원은 2018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2019년 6월까지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선영 외, 2019,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자 개념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가?』 사회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참고.

62) 의료법 제24조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의무로 정하지는 않는다.

로 기록열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은 현실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날 것이다. 특히 연명중단 결정이나 존엄사 등 최근 제도화되거나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의학적 개입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희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거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을까?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는 일정한 순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인정되며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까지 진술할 수 있다.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환자 의사 확인이 어려울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렇듯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환자의 운명에 비가역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환자가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의 돌봄과 친밀함을 통해 서로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준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평등정책 |

- 병원의 행정편의를 위한 보호자 동의 요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 환자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의료인의 설명, 의사결정 등의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 지정대리인 규정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2) 재난으로부터 함께 벗어날 권리

한국사회는 최근에서야 재난을 사회적으로 겪기 시작했다.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연히 누군가에게 찾아든 불행 정도로 이해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운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만큼 재난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이 사회적 과제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도 확립되어가고 있다. 가족은 재난을 가장 한가운데서 함께 겪는 사람들이다. 희생자의 가족, 생존자와 그 가족, 실종자와 그 가족 등은 재난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데 이때의 가족을 법정 가족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재난으로부터 탈출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관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⁶³⁾ 가족의 범위 규정이 누군가의 지지를 내치는

63) 사회적 약자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도 간병인, 도우미,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대한 의존과 지원 필요성이 높다. 즉, 사전에 사회적 약자를 원호할 수 있는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참고.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법령 중 재난 피해자를 규정한 것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⁶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피해자 지원을 다루지만 법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이 있어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구호와 복구활동이 시작된다. 재난 피해자에게 구호,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이때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구호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적부나 가족등록부를 확인한 후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정되며, 실종자가 있어 구조현장 인근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또는 직계가족이 생활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호비가 지원된다. 법적으로 증거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이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구호물품을 지원할 때 외국인은 구호 대상에 포함되는데 "불법체류자 제외"가 명시되는 차별적 요소도 있다. 이와 같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다양한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차별경험 사례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차별 경험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망이 두절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하거나 이미 사망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때 재난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누구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지길 원할까? 국가가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 관련 법률은 당사자의 행방을 통지하도록 한다.⁶⁵⁾ 적절한 범위를 정해 통지 규정을 두는 것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되 개인이 보호를 구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행방을 누군가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는 아직 없다. 그러나 재난 피해자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만큼 그의 소식을 가장 간절히 기다릴 사람들에게 전달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야 재난에 처한 사람이 든든한 도움과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게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지원계획서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가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족이 외교부장관에게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가족은 민법 제799조 규정을 따른다. 국내 재난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된 체계가 정비될 필요는 있다. 재난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정보가 적당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6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피해자' 중 가족은 희생자나 생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인정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말한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이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비슷하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아니한다)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이때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사망의 경우 가족이 없으면 다른 친족에게 통지된다).

있도록 하고 적절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난에 처한 당사자가 외국인 주민인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는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못했다. 현장에서의 지원이나 심리회복지원 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때 현행 법제도에서 가족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⁶⁶⁾ 이들은 당사자와 함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⁶⁷⁾이기 때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등정책 |

- 재난 현장에서부터 이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재난피해자 지원체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차별금지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지원체계의 세부 내용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가족형태,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의 관점에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3) 애도를 누릴 권리

“부인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수받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서로 남남이었기 때문이다. ... 김 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시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전남편과 강 씨 슬하의 자식들은 구청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 씨는 '무연고자'가 됐다. 지난 5월 20일, ...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진행됐고, 이날 화장된 강 씨의 유골은 용미리 무연고자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⁶⁸⁾

“장례는 간소하고 즐겁게, 내가 살던 집에서 치러주시라. 부의금은 받지 말고 꼭 내고 싶다고 하면 모아서 우리 부모님께 기증한다. 장례 절차는 최00과 노00에게 미리 말해두었으며 전적으로 그들이 내 뜻에 맞게 장례를 거행한다. 그들이 내가 살던 집에서 친환경 고구마와 공정무역 커피와 차, 유기농 빵, 주먹밥으로 조문객들을 대접한다. 젓가락과 텀블러는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각자 챙겨 오시고, 일회용품, 화환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노00은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이니 장례식 당일 우리 집에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시라. 살아생전의 내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웃고 즐겨워 하시라. 우리 부모님은 이런 장례식이 불편하

66) 인명 피해 경험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을 보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족일 때(48.58점)와 친구일 때(50점)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인명 피해 당사자가 누구든지 PTSD 반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요인 조사 분석 및 재난구호 기술개발』 참고.

67)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재난 후 상해 및 질병의 발병률과 유지율이 높으며, 완치율은 낮다. 비독거노인은 회복탄력성과 삶의 질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족 등에서 심리적 지지가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 테니 특별히 최00과 노00이 챙겨주시라. 친척들도 불편해 하실 테니 부모님께서 외가, 친가 친척들을 직접 모시고 좋은 곳에서 밥 한 번 대접해주세요. 장례식은 저랑 각별히 친했던 사람들이 편하게 저를 기억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해주시고 일 년에 한 번 보거나 친척, 인척 관계로 엮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⁶⁹⁾

죽음 이후로도 기댈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죽음을 준비했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우리 곁에 있던 사람임을 기억하며 최대한 예를 갖추어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의식을 수행한다. 관습을 따르든 자신만의 형식을 가지든 애도는 의식을 통해 형상화된다. 누구나 자신이 죽고 나서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방식으로 장례가 치러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가장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장례절차를 주도해주시기를 바랄 것이며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남은 사람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랄 것이다.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미리 남겼다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장을 미리 써 놓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며 효력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항은 시신을 인수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를 정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그 외 지인들의 시신 인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선순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했을 때 후순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위 사례처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친구들, 조카의 장례를 치러주려는 이모 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⁷⁰⁾ 연고자의 범위에 다양한 가족형태나 친밀한 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로 인해 망인의 애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무연고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7년 무연고사망자는 2,010명이다. 그런데 법에 의해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주목해야 한다. 시신인수나 장례에 드는 비용 문제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연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인 썸이다. 독거 기초생활수급사망자 규모나 점증하는 1인 가구 비율까지 고려한다면 모든 사람이 애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장례에 대한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의 장례비 수준은 75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등이 제정되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데 지원 수준이 극히 미미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렵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침에 따르면 "통상적 수준 장례비 범위 내 우선 지급보장"하도록 심의하여 결정한다. 법의 목적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겠지만 누구든 최소한의 예를 갖춰 세상과 작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상품화 된 공영장례 제도도 검토되어야 한다.⁷¹⁾

68) 비마이너, "살아생전 '부부'였던 당신과 나, 죽음으로 남이 되었다", 2018년 12월 5일자.

69) 블로그 Eco Lounge, "생일날 아침, 찬란한 유언장 쓰기", 2013년 10월 27일.

URL: <https://ecolounge.tistory.com/322>

70) 나눔과나눔, 2019,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평등정책 |

- 사후 장례 등의 절차에 당사자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 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사후사무 위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망인의 뜻을 알 수 없을 경우 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고자 범위와 우선순위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이 애도를 누리고 예를 갖춰 세상과 작별할 수 있도록 장례비 지원과 공영장례절차 운영 등 국가 책무를 높여야 한다.

71) 나눔과나눔, 위 자료.

5. 가족 해소의 권리

온전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권리가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해소의 권리이다. 원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란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는 가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성원들에 대한 돌봄의 관계,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지만 차별과 폭력의 장, 굴레가 되기도 한다. 체벌이나 가정폭력, 자식에 대한 감시 등의 사안에서는 가족 안의 일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억압이 가려지고 더 많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한번 법적으로 만들어진 가족 관계는 쉽게 해소할 수 없다. 이혼에도 법적·사회적 제약들이 따르고, 친권자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학대 등을 입증하고 다른 후견인을 두어야만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혈연관계를 이유로 학대의 가해자가 유산이나 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일도 일어나고, 범죄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이 본인의 의사는 무시한 채 대신 가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된다.

가족을 쉽게 해소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각종 억압과 폭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면도 있다. 가족을 지켜져야 한다는 당위 또는 생존을 위해서 가족에 기대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족 내부의 문제를 감내하게 만든다. 가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평등과 존중이 자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족은 상황과 선택에 따라 해소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해소하기 어렵고 떠나기 어려운 가족의 문제는 특히 소수자이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다. 가족 안에서도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가족을 떠나면 사회에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이고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족은 안락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굴레가 되곤 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해소할 권리는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 하는 소수자에게 더 절실한 권리이다. 이는 가령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회보장을 가족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등을 해야 하는 쪽에 비하여 양육이나 지원을 제공받아야 하는 측에서 가족 관계를 해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게 가능해야 할 것이다.

1) 혼인을 해소할 권리

이 변호사는 “제도가 취약하다.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준부와 관련한 권한이 전부 남편한테 있다”며 “남편은 체류자격을 볼모로 권력이 생기고 이주여성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여성이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할 때, 아이 없이 이혼을 한다면 남편의 귀책사유를 이주여성 스스로가 완전히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이 연장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일정정도 유지시켜주는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의 귀책사유가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이주여성의 언어능력, 소득상태, 아이의 양육을 함께 돌봐줄 가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한국인 배우자에 비해 양육권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설령 이주여성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주여성의 체류자격은 사라진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역시 남편의 귀책사유가 온전히 입증되어야만 한다.⁷²⁾

결혼이 법적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듯이, 이혼은 법적으로 가족을 해소하는 일반적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더 어렵게 되어 있다. 이혼숙려제도는 “찾김이혼을 막고 가정해체를 방지한다”라는 취지로 도입되어 그 취지 자체가 가족의 해소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강화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소득이 적은 쪽은, 이혼을 신청한 뒤 이혼숙려 기간에는 제대로 양육비나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양육 부담을 지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은 여성에게 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혼 이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여성이 주로 많이 하는 가사노동은 그 가치가 덜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가족 안에서 더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일수록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만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가족을 해소하기도 어렵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이혼하게 되면 체류 자격도 자식에 대한 양육권도 가지지 못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더라도 제대로 요구할 수 없게 되고, 반면 원주인 남편의 이혼 요구는 위협으로 작동하게 된다.

평등정책 |

- 이혼 당사자의 가족 해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혼숙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안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조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시 결혼이주여성이 귀책사유, 자녀 및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을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간이귀화만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에 따라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72) 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에 몰아매는 제도란 - 체류자격·국적획득 등 이주여성 생존권은 남편에게… 결혼·출산의 도구로 보는 인식도 한 몫”, <미디어스>, 2019년 7월 9일자.

2) 친권을 해소할 권리

“청소년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단독 세대주거든요. 물론 이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흔하지 않아요. 보호 시설로 주소 이전을 해야 각종 지원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전에 잠깐 원룸 얻어 살 때도 단독 세대주가 되긴 했는데, 그건 학교를 들어갈 때 주소지를 이전해야 해서였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집 내 주신 분께 서류를 받고, 제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때 직원이 '안 될 것 같은데...' 했었어요. 근데 윗사람이 오더니 '상황이 그러니까, 뭐. 해 줘라' 하더라고요? (현재 주민등록제도 상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 항목 중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을 스스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세대주의 확인 또는 본인의 법정대리의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읍-면-동장은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영아가 설명한 경우가 이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주)”⁷³⁾

부모(보호자)와 미성년 자식 사이에 존재하는 친권이나 자식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존재하는 부양의 의무 등은 혼인 관계보다도 더 해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의 어린이·청소년은 가족 안에서, 친권자의 보호와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는 규범이 존재하고 이러한 틀을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일탈이나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의 폭력 등으로 인해 탈가정을 해도 부모가 전입신고 된 주소를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에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휴대전화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의 탈가정을 돕는 경우에는 유괴죄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을 입증해야만 한다. 2015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자식 본인도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법원 등의 아동학대 인정 기준은 믿을 만하지 않고, 대안 양육 가정이 부족하여 시설에 입소해야만 한다는 현실은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친권 상실 청구 등을 한층 더 망설이게 만든다.

평등정책 |

- 좀 더 쉽고 자유롭게 친권을 제한(개인정보의 열람이나 법적인 대리 권한 행사 등을 제한)하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대안 양육을 탈시설화 하고 확대하여 청소년의 가족 관계 해소가 더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

73) 탈가정 청소년의 사례. 오마이뉴스, “보호자 없는 청소년, 갈 곳이 없다”, 2018년 7월 26일자.

[토론 1]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토론문 - 한부모의 자율적 가족구성권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1.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눈으로 여전히 의심받는 싱글맘

한국의 가족계획 사업은 결혼한 남녀에게 자기 가족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근대적 주체가 되라고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 내지 개별 가족의 자율성 증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배은경, 2005). “출산 조절을 ‘가족계획’안에 그리고 성을 ‘결혼’ 안에 밀봉”하려 했다는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재생산적 ‘권리’ 없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여성의 몸이 자신의 것 이라기보다는 ‘가족’ 혹은 ‘국가’의 자산으로 여겨지게 했다.

‘미혼모, 사생아’라는 사회적 배제는 혼외출생이라는 사각지대가 만들어 졌으며 ‘버려지거나 포기되어지는’아동들은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OECD 회원국들의 2014년 기준으로 혼외출산률은 프랑스(56.7%), 노르웨이(55.2%), 덴마크(52.5%), 스웨덴(54.6%) 에 비해 한국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형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의 효력이 상실된다. 지금도 여전히 낙태는 불법으로 현금결제, 남성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한데 비혼출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비혼출산은 보호와 지원담론 안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과도한 증빙서류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불시에 방문해 거주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여성이 재생산에 대한 권리 없이 인구통제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국가담론은 이후 싱글맘들을 위한 법개정으로 이어진다. 2003년 모·부자복지법과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복지급여 확대와 가족정책의 확대로 다양한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지만, 2008년 이후 여성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가족화’와 ‘양성평등’ 담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안에서 한부모와 미혼모는 시혜적이고 잔여주 의적 복지체계 안에서 ‘복지맘’으로 불리우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52%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를 43만 명으로 본다면 전체 25%내외 지원받고 있으며, 전체 한부모 154만 명일 경우 10%미만의 한부모만 지원받을 수 있다)만을 위한 지원법 안에서 사회적 차별과 낙인감은 증대되고 있다.

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지만 싱글맘들이 사실혼 관계를 의심받거나 혼자서 경제를 책임지며 아동을 양육하면서도 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1백51만원)⁷⁴⁾를 넘어서게 되면 법정한부모가족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비양육자 부 또는 모에게 아동의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구조⁷⁵⁾ 안에서 한부모 여성의 빈곤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 (한부모)여성의 빈곤화

2019년 7월 31일,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북한이주여성인 한모씨와 여섯 살 아들의 사인은 ‘아사’였다.⁷⁶⁾ 세계 경제력 11위이자 저출산을 위해 13년간 쏟아 부은 국가 예산이 150조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전 재산인 70만원을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우리는 여전히 황망한 참사와 다시 한 번 마주해야 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 모델은 이미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인적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들은 아이를 갖게 되는 30대 즈음, 고용률은 급락을 한다. 더군다나 결혼 제도 밖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는 가난과 고립된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은 채 자녀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이주여성, 다문화이주여성, 이주난민여성들이 자국의 남성생계부양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란 언어장벽 외에도 이념과 인종차별 등의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혀 대한민국의 복지정책과 저출산 정책 안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북한이주여성 한모씨의 죽음에는 국경을 초월한 이념의 문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 사회 복지전달체계의 문제, 북한 이주여성으로서의 문제 등 ‘빈곤’의 또 다른 이름인 ‘취약 계층’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곳곳에 숨어있다. 게다가 한모씨의 죽음에는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74) 2인가구일 경우 1,511,395 원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적이전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너무 낮다. 재산을 가지거나 근로소득이 조금만 넘어도 한부모는 국가에서 실행되는 복지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열등수급의 법칙’이라는 국기초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복지수급을 받는 대상자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하는 것으로 ‘빈곤’은 이제 중위소득을 올리고 소득환산액 기준을 올리는 문제 보다는 국가별 복지체제 유형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보건복지부)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주거)

- 대도시 54,000,000원, 중소도시 34,000,000원, 농어촌 29,000,000원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도"시" / 농어촌:도"군"(2019, 여성가족부)

75) 비양육자에게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는 78%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와 출국금지 등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76) 세계일보, “‘아사 탈북모자 추모 및 장례위원회’ 발족한다”, 2019년 8월 20일자.

하는 여성 즉, 한부모의 이슈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선 문제의 ‘이혼확인서’를 살펴보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서류’가 아닌 ‘임의서류’ 중 하나로 탈북과정에서 위장결혼을 한 전 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을 증빙할 도리가 없었던 한모씨는 결국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복잡한 신청절차의 문제와 열악한 노동 시장 안에서 여성생계가장들은 낸시 프레이저의 지적처럼 “시장에서 그들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거의 부정된 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결손’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수혜자가 된다. 그들은 권리를 부당한 채 감시와 행정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대체로 국가 관료주의에 기생하는 남루한 의존자로 낙인찍힌다(Nancy Fraser, 2018).

이혼률과 미혼모의 증가,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 증가로 가족구조는 변하고 있으며 남성가구주의 빈곤율은 11%인데 비해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36%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과 노동가능성은 악화되는 반면 가족의 보살핌 책임강화에 따른 고용접근의 제한은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소위 ‘일을 통해 성취하는 사회’의 주요 대상은 여성(특히 유자녀 여성)에게 집중되어야 하며 가족 내 돌봄의 주체로 간주되었던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보장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공적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윤홍식, 2006).

3. 차별을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2004년 보수적인 가족정치에 기반한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는 여성주의정치와 가부장제에 기반으로 한 가족정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부터 2013년은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가족화’를 강화하는 보육정책으로 그리고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으로는 젠더를 폐기하고 다시 섹스를 불러오는 ‘성평등(gender equality)’ 후퇴의 역사(배은경, 2016) 이다.

국가에서 한부모를 담당하는 기관은 참으로 많다. 여성가족부 내에 가족지원과가 총 사령탑으로 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과 양육비를 담당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그리고 각 시도에 여성과 가족을 키워드로 한 부서들과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8년 기준 전국 151개이다.⁷⁷⁾ 그리고 이 많은 기관과 인력을 움직이는 근간은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인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2005.1.1)과 함께 요보호 가족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외에도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의 설치를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확충할 계획임”(e-나라지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수 중에서)이라 밝히며 다문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해 ‘요보호가족’임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7) 건강가정지원센터는 '04년도에 3개소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05. 1. 1.)됨에 따라 '05년 16개소, '07년 66개소, '08년 82개소, '09년에는 98개소이며, '10년도에는 138개소, '11년도에는 139개소, '12년도에는 148개소, '13년도 이후부터는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링크 참고. URL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2

2019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혁신 계획안을 살펴보면 한가원이 잘하는 것으로는 가족관련 지역센터 서비스 인력전문성 제고(46%), 지역 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34%), 가족친화환경조성 지원강화(33%)의 순이었고 한가원이 부족한 점으로는 경영관리 선진화(38%)로 비사업적인 내용의 응답이 높았고, 가족관련 지역 센터 서비스 인력전문성 제고(36%), 지역센터 모니터링 및 컨설팅(26%)순이었다. 2014년 다문화·장애아 가족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결혼중개업 및 종사자 교육을 7차 운영 중이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제35조 1항)을 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제35조 2항).

2005년 당시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 형태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의 명칭과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중립적으로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본문 중).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2014년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성평등(gender equality)’ 후퇴의 역사로 가족정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양한 가족사업 보강과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그 근간은 역시 건강가정지원법으로, 개정안은 발의 되지도 못한 채 계속 난항 중이다.

현재 가족은 더 이상 혼인·입양·혈연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혼과 미혼출산이 급증하고 개인화가 만연한 시대 더 이상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가정사 배출과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제를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혼인에 의존했던 ‘가족’이 해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랑 없는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는 좀 더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로 비혼, 다양한 동거, 이혼, 미혼, 재혼 등 의심 없이 보편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율적 가족구성권’이야말로 성평등한 사회가 아닐까?

[토론 2]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토론문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 정부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핵심이다.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은 이주여성을 가족 내 재생산 노동을 담당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혼인 상태, 자녀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촘촘하게 달라지는 체류 정책은 가족 유지와 한국 국적 자녀 출산을 종용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강요된’ 출산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 비자로 와서 임신, 출산할 경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여 법무부가 2018년 12월 모범 귀화자를 선정한 내용을 보자. 남성 2명, 여 2명, 모두 4명을 모범 귀화자를 선정했다. 이 중 남성 2명은 중국 동포 출신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현재 해양 경찰인 사람, 파키스탄 출신으로 수출의 탑 수상한 기업가가 선정되었다. 반면 여성 2명은 모두 혼인귀화자였는데, 베트남 출신으로 고령의 시어머니와 어린 세 자녀 부양하면서도 검정고시 등 학업과 자원봉사에 열심인 여성, 필리핀 출신으로 시부모 등 대가족 부양하고 생계와 자원봉사를 활발히 한 여성이었다. 한국 시집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여성이 모범적 모델이다.
-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할 수는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부모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 지원 목적일 때뿐이다. 자녀가 7세가 될 때 까지만 가능하다. 한국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를 친정 가족을 초청해서 양육 노동을 하도록 하면서도, 친정 부모 부양을 위한 가족결합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가족은 가족이 아닌 것일까?
-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한 가족만을 말한다.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 가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이선외(2015)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외국인 중 49.3%인 약 52만 명이 자체적인 자격으로 입국하여 실질적 가족 이주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 결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족 내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정책권 관심이 제한되어 있으며, 가족 이외의 이주자 가족 규모와 그들의 가족생활 현실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을 지적하였다⁷⁸⁾.

78)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 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동거 상태일 때,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다문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자녀가 없이 이혼, 사별하여 홀로 남은 외국인 여성은 결혼 비자로 체류하더라도 다문화 가족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1인 가구로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제도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계 자녀의 출생등록을 어렵게 한다. 결혼이주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으로 혼자 된 후에 한국에서 자국 출신 남성이나 제3국 출신 남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다. 그 자녀를 출생 등록은 자국 대사관에서 해야 한다.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대사관은 아이와 친부의 관계 증명을 요구한다. 친부를 밝히지 않고, 이주여성 스스로 자신의 자녀를 등록할 권리가 한국에도 이주여성의 출신국에도 없다.
- 현재 한국의 헌법은 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하위 법령이 그 영향을 받는다. 87년 헌법 제정 당시 외국인 수는 매우 적었으나 지금은 전체 인구의 5%을 육박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의 흐름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이주민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변화하지 않는 한, 개별 제도를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토론 3]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토론회 - 장애여성과 가족 : 친밀한 통제, 불안한 돌봄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부양 혹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 여성과 가족의 관계는 장애여성이 받아야 하는 돌봄(활동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우 제도와 돌봄의 공백을 가족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메우며 살아내고 있지만, 모든 가족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처럼 숭고한 희생과 따듯한 돌봄만이 가족관계를 채우고 있지 않다. 장애여성들이 호소하는 문제의식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가 만들어낸 소위 정상가족의 이미지와 정상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정부의 제도들이 장애여성을 주체적인 사람으로가 아닌 가족에 종속된 존재로서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족이 어떻게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의견과 공감의 마음을 보태고자 한다.

○ 장애여성과 가족

장애여성공감은 다양한 조직활동 및 고유사업등을 통해 많은 장애여성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주 얼굴보는 장애여성들은 눈이 마주치는 활동가를 붙잡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한다.

“오빠가 00랑 놀지 말래요, 맨날 술이랑 담배 심부름 시키고.” (동료상담네트워크 A)

“엄마가 지갑 잃어버렸냐고, 찾아오라고, 못 찾아오면 시설 보내버린다고 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개별인터뷰 F)

“할머니 돌봐야하는데, 할머니가 밤새 잠을 못 자게 해. 물 떠와라. 화장실 가야한다.” (동료상담네트워크 C)

언뜻 별거 아닌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장애여성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다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일상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다. 장애여성들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들의 호소들이 많은 부분 ‘가족 내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남성의 경우 장애여성에 비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는 가족의 기대를 받으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커가며 더 이상 집안에서의 돌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시설에서 살게 된다. 하지만 장애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위험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자 ‘무능력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인해 보호와 통제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적 역할을 기대 받지 못함으로써 공교육에서 배제를 받고, 그 배제의 경험은 장애여성의 빈곤한 관계망 형성과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으로까지 전생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여성이 공적인 관계맺음이나 소통을 통해 협상-조율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어떤 것을 거부하는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가족 안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장애여성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요구받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지만 장애여성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강도나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가족 내에서 드러나는 위계나 노동들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가족 내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족은 내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했다. 학교 다니는 것도 가족이 원치 않아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겨울방학을 끝으로 내 공부는 중단되었다. 학교를 그만두자 나는 외출할 이유도 사라져버렸다. 우리 집은 계단만 있는 3층 주택이라서 누군가 나를 안거나 업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었다. 집에만 갇혀 있게 되면서 나의 일상은 온종일 누워서 TV를 보거나 가끔 언니들이 읽던 소설책을 훑쳐보는 것이 다였다.”⁷⁹⁾

“(가족에게 직장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봤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무조건 돌봐야 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똥/오줌 내가 다 받아냈어.” (당사자 개별인터뷰⁸⁰⁾)

“너무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통장을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비로 다 나가고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돈인데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잘 안 주시려고 하죠.” (동료상담네트워크 D)

특히 누군가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여성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없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가족에게 신변보조 등의 활동보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 불평등함이나 혹은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하게 형성된 장애여성이 가족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전생애적으로 가족과 주변인들에 의한 장애여성에게 대한 견고한 요보호 프레임은 장애여성을 가족에게 묶어매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요보호 프레임은 장애여성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정함과 동시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덧씌워 놓고 통제적 돌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79) 김상희, 2018, “나는 남의 손이 필요합니다”, 장애여성공감, 『어쩌면 이상한 몸: 장애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파주: 오월의봄).

80) 장은희, 2018,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차별경험”, 『불편한 옆자리: 장애여성 인권상담 이슈 간담회』 토론.

○ 장애여성을 가족에 종속시키는 제도

“사회보장이 개인의 돌봄과 부양의 문제를 가족 내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림에 따라 개인들이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이다”(발제문)라는 문제의식은 사회보장제도에 가까이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는 제도임과 동시에 가족에게 종속되어 ‘짐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⁸¹⁾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장애인당사자 소득기준이 아닌 가족소득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 소득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받을 서비스의 이용료⁸²⁾가 적용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은 자신으로 인해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한다는 생각에 서비스 이용에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를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에 의해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느 날 보니까 계속 오시던 활동보조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번호가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왜 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씨 아빠가 끊었다고 갑자기” (당사자 개별 인터뷰 E)*

둘째,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돌보는 제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을 독립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로 보장한다는 운동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가족으로 상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의무와 책임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장·학교 다니지 않는 가족에게 돌봄 역할 전가

장애인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조사표라고 하는 도

8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활동보조는 2007년도에 장애인운동계의 수년간의 투쟁으로 제도화를 이루어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은 신변보조, 가사보조, 이동보조, 사회활동보조를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2) 장애인활동지원사업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면제, 차상위 2만원 부터 가족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20만원에 가까운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구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을 가구특성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65세 미만의 가족 중 학생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볼 것을 상정하고 추가 시간 배정이 되질 않는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활동지원사는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 2018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⁸³⁾’을 발의했을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내고 당사자들의 독립적 사회 환경 구축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본적 취지로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영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전면 허용된다면 현재의 열악한 활동지원사 조건보다 더 값싸고 쉬운 가족노동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다.⁸⁴⁾



▲ 지난해 5월 8일 활동지원 가족 허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DB

“A가 여자아이인데, 엄마랑 아빠는 일을 하고, A오빠가 대학생이에요. 오빠보고 동생을 돌보라는 거지. 오빠도 취업준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해야 하고 자기 먹고살기 힘든데, 동생을 어떻게 돌보라는 건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 부모)

부양의무제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가족의 역할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제도 때문에 가족이 책임지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고, 가족의 책임만 강조되며 개인 혹은 가족의 불행으로 치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장애인운동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수용시설폐지와 함께 3대 적폐로 명명해왔고, 수년째 요구해 온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단계적 폐지를 약속을 받아냈다. 2018년부터 우선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에게 체감되진 않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시급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부분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생명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다.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로 더 이

8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활동지원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 허용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발췌. - 에이블뉴스, 2018.

상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즉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를 해야 할 것이다.

○ 시설화 된 가족 안에서 유예되는 개인의 삶

정상가족에 대한 신화가 계속되는 이상 정상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가족의 시설화⁸⁵⁾ 양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시설화란 시설 내부에서 작동하는 규율체계만이 아니라, 사회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인간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시설화가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많은 존재들의 삶과 연결될 때 시설 안과 밖의 경계는 모호하며, 특히 시설화의 메커니즘에 동원되어온 이상적인 가족의 상 또한 은폐된 삶의 자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는⁸⁶⁾ 맥락에서 시설화된 가족 안에 민주주의나 평등이 자리 잡기는 요원하다. 가족 내 권력 구조와 위계는 집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뿐더러 가족 구성원 안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여성의 의견이나 입장은 존중받기 어렵다. 가족을 유지해야 지원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들로 인해 장애여성이 독립을 원하거나 혹은 가족 안에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조차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빈번한 이유이다. 장애여성은 유일한 관계인 가족과의 분리가 매우 어려운데, 첫째,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가족으로 전제하고 있는 문화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호소나 요구보다는 보호자로 호명되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더 신뢰감을 보이는 사회나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여성이 용기를 내어 가족과 분리(가족 해소)를 원할 경우에도 개인 구성원의 삶이나 권리보다는 가족유지가 목적이 사회에서 가족해체라고 하는 부담을 장애여성이 감내하기 어렵다. 셋째,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원받았던 사회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줄어들 것까지 각오하는 것은 자원이 없는 장애여성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거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가족에게 의존적인 장애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장애여성이 받는 사회서비스나 사회보장권에 가족들이 이용하면서 의존하게 될 때 당장 자신이 독립하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우려되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장애여성들에게 “그래도 가족은 소중한 것”,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잡혀있어 가족 내 문제제기가 더욱 어렵다.

○ 가족의 역할과 가족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만드는 활동지원

2007년부터 제도화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그나마 가족이나 시설종사자들을 통해 받아왔던 활동지원이라는 돌봄이 장애인의 권리로 제도화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법으로 제정됨으로 인

85)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에서 나영정은 특정한 시민의 역량을 박탈하고, 무력화/불능화하는 권력이 시설화의 핵심이라고 해석하였고,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에서 조미경은 “시설화는 지배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해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무능화/무력화’ 된 존재를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비마이너> 2019년 연재 참고.

86)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비마이너>, 2019년 7월 11일자.

해 장애인들이 상상한 삶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제도화된 지 10년이 넘는 활동지원 현장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평가, 다른 몸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나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을 주고받는 이들 간에 험난한 역동과 부대낌이 있는 현상이지만 돌봄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깨지고 있고, 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써 부각이 되고 있다. 장애여성공감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몸을 만나는 경험은 가족도 아니고, 돌봄노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친밀하면서도 긴장감을 가진 동료 간에 활동보조라고 하는 돌봄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이진희는 장애여성에게 동료로써 지원했던 활동보조를 “존엄이 담긴 기술과 노동”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활동지원을 받는 위치에서 존엄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몸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친절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여성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을 몸으로 습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⁸⁷⁾ 라는 말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돌봄이 전통적 가족의 역할을 넘어서 동료시민과 다양한 관계들로 확장되었을 때 ‘비정상적’이고 ‘다른 몸’에 대한 ‘차별하지 않는 감각’들 또한 함께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각들이 제도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쌓여야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상가족주의도 해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이 아닌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 모색하기

결혼을 통한 정상가족이라는 기준안에 서길 요구받는 장애여성들,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거라는 편견 어린 시선을 감내하는 비혼/1인 가구/한부모가족/조손가족, 성소수자 가족구성에 대한 낙인, 이주민가족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며 정부는 정상가족이라는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 내고, 그 외 가족의 형태는 개인의 선택이니 알아서 살아가라고 한다. 발제문에서 “사회복지 영역 복지, 주거, 의료, 가족돌봄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권이 가족이라는 경로를 통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제도적 인정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짚어주었듯이, 한국은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로써 정상가족 외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취약가족”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거나,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족으로 대상화하여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편견과 시혜적 관점의 지원 대신 다변화하고 있는 가족들을 제도가 어떻게 포섭하고, 권리로써 보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혈연가족이라는 범위를 넘어 개인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며 돌봄을 주고받고, 삶을 공유하는 제도 밖 신가족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제도에 의해 배제되는 많은 시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사회적으로 동등한 시민으로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지만을 주며 장애여성이 원하는 삶이나 삶의 조건에는 질문하지 않는 정부.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가족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정부는 응답하라!

87) 이진희, 2018, “실패를 위한 활동, 포기하지 않는 몸”, 장애여성공감, 『어쩌면 이상한 몸: 장애 여성의 노동, 관계, 고통, 쾌락에 대하여』 (파주: 오월의봄).

[토론 4]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토론문

전희경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저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나이/늙음, 질병, 돌봄, 죽음, 시간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제시한 분석과 제안에 거의 전적으로 힘껏 동의하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생각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1. 어떻게 ‘니 문제’에서 ‘내 문제’로, ‘내 문제’에서 ‘우리 문제’로 만들 것인가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질병과 돌봄, 늙음과 의존이라는 주제 자체가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안타까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곧바로 ‘국가 책임’과 ‘정책 변화’를 논하는 ‘전문가들의 의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불행한 일을 당한 ‘타인의 문제’이거나,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타인이 문제’인 셈입니다.
- 6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견되어 있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평균 17.5년에 이르며(대한노인병학회, 2018), 가족돌봄을 받는 환자가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서울신문, 2019), 여전히 이것이 ‘안타까운 남의 문제(개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질병, 늙음, 의존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몸의 정상성 규범과 이에 기반한 경제체제가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한 편 이 주제를 ‘전문가들의 정책 의제’로만 국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프레임은 문제를 ‘국가경제’나 ‘인구정책’이라는 틀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논의의 구도 자체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정책도 친밀성을 만들어주거나 돌봄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친밀함과 돌봄의 공동체”로, 그리고 혼인·혈연·입양 등의 절차로 완결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친밀한 관계와 돌봄의 주고받음을 통해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제도와 정책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로,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와 일상적 관계의 문제로 취약성과 돌봄의 의제들을 위치시키는 것.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게 되는 ‘가족’이라는 틀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차별들을 더 큰 하나의 지도 위에 펼쳐 놓는 발제문은 심금을

울리고, 많은 배움과 더 좋은 토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잘 돌볼 권리”와 “운명을 기댈 권리”라는 표현은 그간의 정책언어에서는 인식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돌봄 정의의 문제

- 발제에서는 “더 잘 돌볼 권리”에서 1)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권리와 2) 평등한 돌봄지원을 받을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논의가 기존의 협소한 가족개념을 비판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 시민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옹호하고자 한다면, 돌봄의 정의(justice)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봄 자체가 언제나 불가피하게 고역인 것이 아니라, ‘독박’이 되는 구조, ‘큰 희생’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고역이 됩니다. 정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을 제대로 인정하고 더 많은 돌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 부정의하게 분배되어 왔던 돌봄의 성별분업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는 이미 IMF 당시 “사내부부 우선해고”가 어떻게 “여성해고”로 변환되는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부당한 통념에는 사실 많은 시민들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성차별 해고는 불법이었지만, ‘남성이 주 생계부양자’라는 성차별적 통념이 불법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법제도나 정책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구조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분명한 취지와 실효성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할 경우, 문제적 문화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딸은 살림밀천”이라는 생각이 “비혼 딸이 노후대책”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문화적 상황은, ‘이미 행하고 있는 돌봄을 제대로 인식하라’(가령 돌봄 휴직 사용 범위 확대)는 것 이상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돌봄의 부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기존의 가족형태 명칭 자체가 현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에 충분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인가구’는 사실상 ‘1인’으로 살기보다 (제도가 인식하지 못하는) 넓은 관계망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혼인 딸들은 ‘1인’이기 때문에 혈연가족의 돌봄에 가장 먼저 호출됩니다(“어쨌든 너는 너 혼자잖아”).
- 가족 내 돌봄의 약 80%,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의 90% 이상을 여성이 하고 있는 돌봄의 부정의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돌보는 이들을 위한 정책 역시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함께/나눠서 돌볼 권리”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생애 전체’와 ‘관계성’의 관점에서 언어 만들기

- 물론 이는 누군가를 ‘잘 돌본다’는 것이 한 사람의 주돌봄자를 통해서만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돌봄의 속성과 양상에 대한 이해에 기반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영향 받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여러 겹의 돌봄의 원 없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 고립되면, 그런 돌봄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가령 레스핏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그 기간 동안 ‘믿고 맡길 기관/사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돌봄이 ‘가족’ 안에 고립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누군가를 오래 돌본다는 것이 돌보는 사람의 ‘인생 전체’에 얼마나 다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 생애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시민에게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일생 안에 “더 잘 돌볼 권리”와 “운명을 기댈 권리”가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 더 큰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돌보는 것이 ‘희생’만은 아닌 정책, ‘희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유급 돌봄휴직, 돌봄지원수당 등)을 설계할 수 있고, 애써 만든 정책들이 ‘눈치 보게 되는’ 문화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사용 가능한 권리가 될 것입니다.
- 다른 한 편, 어떤 ‘자기결정권’의 ‘자기’도 진공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제 관계망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을지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어떤 방식으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가는 법/제도/정책 용어로 완전히 포착되기 어려우며, 완전히 포착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웃’, ‘지인’, ‘친구’는 법제도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용어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나이 많은 시민들일수록, 혹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성이든 이성이든) ‘커플중심적’ 가족 경험보다 다른 관계들이 더 중요한 “운명을 기댈”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족평등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간 파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많은 차별들을 모으고 재조직하는 것과 함께, ‘가족’이라는 틀에는 들어맞지 않는 다른 관계성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의 변화로 대체될 수 없는 문화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옥희살롱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뉘는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되고자 합니다.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 발행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행일 : 2019년 10월 23일

| 이메일 : equalact2017@gmail.com

|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

| 페이스북 : <https://facebook.com/equalact2017>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